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최병근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6
----------	-----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 의 자 : 최병근·이동엽·김용현
연구식·이철식·김대진
이춘우·정경민·박규탁
노성환·신호광·이충원
박창욱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책 필요성 증대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및 보호를 지원하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선정(안 제7조~제8조)
- 마. 비용의 지원내용과 지원 기준(안 제9조)
- 바.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예산입법담당관): 검토완료

- 예산입법담당관-14('25. 1. 3.)

나. 규제심사 결과(민자활성화과 현장규제혁신팀): 규제사무 없음

- 정책기획관-353('25. 1. 8.)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부패유발요인 없음

- 정책기획관-353('25. 1. 8.)

라. 해당부서 의견(환경관리과): 붙임

- 정책기획관-353('25. 1. 8.)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4. 제9조에 따른 지원 내용
5.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해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해당부서 의견

실·과	주요내용 (조항)	검 토 의 견
환경 관리과	총괄	<p>재활용품 수집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 동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전에 충분한 시군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또한 동 조례에서는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제2조제1항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는 폐지, 고철 등 외에 소형 가전제품, 이차 전지, 전자제품, 폐타이어, 자동차부품, 식용유 등 다양하여 동 조례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p>
	제2조제2항	<p>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 중 ‘생계를 위해’ 라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p>
	제7조, 제9조	<p>「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하나,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함.</p>
	제8조	<p>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p> <p>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복지 정책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임.</p>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군 및 법인·단체 등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서기보 서명정 (054-880-3534)



경 상 북 도



수신 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환경관리과-82(2025.1.2.)호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도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용의 지원(제9조) 근거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근거의 임의적 성격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을 뿐, 비용추계에 필요한 지원 금액, 범위,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시행 후 재정지원을 결정할 시 향후 재정부담이 예측되는 바,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예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 3.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7	(2025. 1. 3.)		접수	환경관리과-196 (2025. 1. 3.)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